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인권침해사건 대응세칙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4호] [일부개정 2025.06.04. / 공포 2025.06.05.]

제정 2019.12.04. <제정> 개정 2025.06.04.<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2
제 2 장 진상조사위원회	2
제 3 장 사건관계자	
제 1 절 사건관계자	4
제 2 절 피해자	4
제 3 절 피의자	5
제 4 장 징계 및 이의제기	5
제 5 장 무고 및 위증	6
부 칙	6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본 회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원의 보편적이고 불가침적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회칙 제2장(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을 기본으로 하며 해당 세칙에 대한 범위로서 정회원, 준회원을 모두 포괄한다.

제 3 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 제2장(회원 및 그 권리와 의무) 제12조를 기반으로 본회에서 진행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성적 지향성 정체성·국적·인종·사상·종교·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 4 조(책임자)

- ① 이 세칙에서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 그리고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이 세칙에서 “인권침해사건”이라 함은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 학력, 병력, 용모 등 신체조건, 장애 등을 이유로 회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과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포괄한다.
- ③ 이 세칙에서 “피해자”라 함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한다.
- ④ 이 세칙에서 “피의자”라 함은 인권침해사건의 피해발생주체로 신고 되어 지목된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한다.
- ⑤ 이 세칙에서 “2차 피해”라 함은 피의자나 그 외 사람들이 인권침해사건을 은폐 또는 정당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2차적 피해를 말한다.
- ⑥ 이 세칙에서 “사건관계자”라 함은 피해자, 피의자, 대리인, 참고인, 증인, 제보자 등 당해 인권침해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 ⑦ 이 세칙에서 “가해자”라 함은 1) 가해사실에 대한 인정 2) 사법기관 조사 결과 가해사실이 확정된 경우 3) 가해사실에 대한 명백한 물질적 증거가 제시되어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해자로 판정된 자 혹은 집단을 말한다.

제 5 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이 회의 회원일 경우 적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이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이 회의 각 중앙동아리, 분과, 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건
 2. 타 대학과의 연합 활동에서 발생한 제5조 제1항을 만족하는 사건
 3. 학내·학외 지역에서 본회 회원이 포함된 모임에서 발생한 제5조 제1항을 만족하는 사건
- ③ 이 세칙은 미수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책임자)

- ① 동아리연합회장단,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전체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② 이 회의 의결기구 · 집행기구 · 동아리는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③ 운영위원회는 동아리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사건이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할 의무를 지니며 이 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한다. 단, 운영위원회 중 인권침해사건의 “사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공정성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④ 이 회의 의결기구 · 집행기구 · 동아리 대표자는 인권침해사건 방지를 위해 교내에서 진행하는 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 2 장 진상조사위원회

제 7 조(권리)

- ①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에 따라 본회의 회원 간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당해 인권침해사건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다.
-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동아리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할 권리를 지니며 이 세칙 제5조(적용범위)에 따라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제 8 조(의무)

-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2차 피해방지 및 재발방지의 의무를 지닌다.
-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종료까지 “사건관계자”와 함께할 의무를 지닌다.

제 9 조(업무)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2. 조사 결과 보고
3. 징계 요구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안 (단, 징계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한다)
4. 전체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에서 해당 인권침해사건 관련 설명
5. 총학생회 및 단위별 학생자치기구, 학내 성평등 센터를 비롯한 외부 기관에 진상조사위원회 업무에 있어서 사전협조를 요청

제 10 조(조사)

-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권한을 지닌다.
 1. 사건 경위
 2. 사건관계자의 진술
 3.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증거
-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학내 및 외부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학내 인권침해 대응 관련 기관에 동일한 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할 의무를 지닌다.

제 11 조(해소)

-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 후 징계 요구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소한다.
- ② 해소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로 재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사건관계자

제 1 절 사건관계자

제 12 조(사건관계자의 권리)

- ① 사건관계자는 개인정보, 신변 등에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사건관계자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13 조(사건관계자의 의무)

- ① 사건관계자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아니 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사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하여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닌다.
- ③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사건관계자는 해당 조사 과정에 출석할 의무를 지닌다.
- ④ 사건관계자는 보복 및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닌다.

제 2 절 피해자

제 14 조(피해자의 권리)

- ①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 ②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지닌다.
- ③ 피해자는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지닌다.

제 15 조(피해자 보호)

-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황을 고려해 조사할 의무를 지닌다.

- ② 피해자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사건의 대응과 관련한 학내 및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본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지닌다.

제 3 절 피의자

제 16 조(피의자의 권리)

- ①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으며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지닌다.
- ② 피의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③ 피의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4장 징계 및 이의제기

제 4 장 징계 및 이의제기

제 17 조(징계 요구)

- ①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차원의 징계요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단, 제4호는 피해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 1. 경고
 - 2. 공개사과문 게재
 - 3. 동아리연합회 회원자격 제명
 - 4. 학내 성평등센터 조사 의뢰
 - 5. 기타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회원자격 제명 요청 등)
- ② 2호(공개사과문 게재)의 경우 징계가 확정된 후 일주일 내로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2차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이는 가중 징계한다.
- ④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원할 경우 동아리연합회 차원의 징계와 별개로 진행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에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제 18 조(징계 심의 및 의결)

-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본 세칙 제8조(업무)에 근거해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징계 요구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상정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본 세칙 제15조(징계내용)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징계 안건과 관련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52조(개의 및 의결)에 근거해 재적 위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징계 수위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 ① 본 세칙 제 16조에 의해 징계사항이 의결되면 징계의 의결 시로부터 일주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가해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당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전체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에서 징계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본 세칙 제17조에 의해 재심의를 시행할 경우 이는 재진상조사위원회 설립 없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운영위원회는 징계의 감형, 취소,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 재적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제 20 조(징계에 대한 보고)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인권침해사건에 조사 및 징계에 관해 전체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에서 공유할 의무를 지닌다.

제 5 장 무고 및 위증

제 21 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무고”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이다.

② 이 세칙에서 “위증”이라 함은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이다.

제 22 조(징계 내용)

① 무고를 한 자와 위증을 한 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경고
2.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공개 사과문 게재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 후 24시간 후에 즉시 시행한다.

제 2 조(세칙의 적용) 이 세칙은 공포 후 일어난 인권침해사건부터 적용한다.